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43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영환·손명수

이정문 • 한민수 • 한정애

김기표 • 박희승 • 송기헌

이학영 • 박지원 • 이성유

허 영 · 이병진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

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 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처	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
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	
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	
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	
<u>신설&gt;</u>	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또는 선
	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경
	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
	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
	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
	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동
	의를 받아야 한다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